

- 2025년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2차 공고

우리 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28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1 공동이용시설개선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자동차산업 구인난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기업) 광주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산업코드 C30*) 또는 현대·기아 협약 기업 협력사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No	산업분류코드(4대 보험 등록 기준)	
1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4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5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업
6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7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부품 제조업
8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제조업
9	30331	자동차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10	30332	자동차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11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12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13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14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15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1차 공고일(25.3.24)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 신규채용 근로자 : 근로기간의 정한이 없는 근로자(정규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자 포함)
- * 신규 직원(지원대상자) 채용 후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함.
- *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간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하여야함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업 : 1 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5년 7월 28일(월) ~ 8월 14일(목)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개·보수 가능
- 물품구입(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안마기 등)은 지원 불가

○ 기업당 최대 900만원(자부담금 10%이상 필수)

- 신규 직원 1명 채용 시 최대 450만원 지원
- 신규 직원 2명 이상 채용 시 최대 900만원 지원
 -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
 - * 견적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으로 제출

□ 사업 참여기간

○ 2025. 03. 24(월) ~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절차

- [~8/14] 공동이용시설 개선 사업 신청
- [8월중] 현장실사 및 심사평가 실시, 기업 확정/통지
- [8월중] 협약 체결 및 확약서 제출
- [8월-10월] 공사시작 및 완료
- [11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후 현장실사
- [12월] 지원금 지급

□ 기타사항

-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유형별 운영지침을 따름

□ 신청 및 문의

- 신청 이메일 주소 : betworkeco.gj@gmail.com
- 문의처 : 협력사업본부 (062-350-5894/5897~8)

2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제외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 참여제한
-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에서 대상자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 해외 법인의 국내 기업 및 지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된 공기업 등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동일사업주·사업장 간의 6개월 이내 이직으로 인한 지원금은 지급 불가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 **참여기업이 신규 채용 후 인위적 감원이(고용조정 이직*에 해당) 발생 했을 경우 감원 발생한 월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됨**

□ 지원 제외 근로자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 다른 사업장에 취업중인 자로 보는 경우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상용 근로자)로 가입이 확인되는 자
-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 기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6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